○○○씨 경진보 편찬규약

一. 편찬위원회의 구성

가. 고문 겸 후원회장: 길동(대종회회장,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장)
나. 위 원 장 : 길수(전 대종회 감사)
다. 부위원장 : 성공(정승공파 종친회장), 상호(충민공파 종친회장)
대호(문익공파 종친회장)
라. 편집 겸 총무 : 한규(정승공파)
마. 감 사 : 영호(정승공파), 상호(충민공파), 대식(문익공파)
바. 편찬위원
정승공파 : 영수, 대선, 재규
충민공파 : 재수, 용호, 박달
문익공파 : 남수, 만호, 판석
사. 수단위원 : 별첨

二. 임 무

가. 고문 : 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담당한다.
나. 후원회장 : 편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주관한다.
다. 위 원 장 : 족보편찬의 총 책임자로서 제반 편찬업무를 총괄하며, 주로 사보를 담당하되 사보의 수정, 삭제, 변경, 추가 등의 사항은 족보편찬위원회 집행부(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또한 명하전 추가 책정에 관하여 고문, 후원회장 3개 종친회장과 협의 결정한다.
라. 부위원장 : 편찬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 종친회 자손록의 정리, 교정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또한 족보편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담당한다.
마. 편집 겸 총무 : 편찬위원장을 보좌하며 자손록의 편집을 담당하고 제반 지원업무의 실무를 담당한다.
바. 감 사 : 편찬위원회 재정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 시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사. 편찬위원 : 소속 종친회 분담 자손록의 정리, 교정을 담당하며, 단 구 족보상 기록의 수정, 삭제, 변경, 추가, 편입 등의 사례가 발생 시는 이를 소속 종친회의 집행부에 보고하고 소속 종친회장 책임 하에 소속 집행부(회장단) 의결 시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에 보고하면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집행부(회장단)에서 의결 처리한다.
아. 수단위원 : 소속문회 종원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자손록을 작성하고 소속 종친회에 제출한다.

三. 족보 편찬 방침

가. 족 보
一) 족보는 종서로 한다.
二) 사보는 2단으로 원문을 3호 활자로 하고 번역문은 4호 활자로 한다.

주요 어휘 해석은 말미에 기재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三) 자손록은 6단 32행으로 편집하고 이름은 2호 활자로 내용문은 5호 활자로 하여 4권 1질로 편집한다.

나. 권 1에는 숭덕전도등 각종 사진은 칼라로 하고 범례, 항렬도, 여지승람, 비각, 불천지위, 유허비, 서원, 영각, 영당, 장서, 시호, 문집, 역대 구보서문, 근세사, 묘갈명, 묘표, 행록, 참고 부록으로 편집한다.

다. 권 2에는 선원계도, ○○○씨 선원준보, 세보상계, 정승공파 자손분파계도, 정승공파 세보, 정승공파 색인부를 편집한다.

라. 권 3에는 충민공파 자손분파계도, 충민공파 세보를 편집한다.

마. 권 4에는 문익공파 자손분파계보, 문익공파 세보, 역대구보발문, 편집후기, 족보 편찬요강, 편찬위원 및 수단위원을 편집한다.

바. 활자체는 청조체로 통일한다.

사. 한자에는 한글로 토를 달아서 한글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四. 각 종친회의 협조사항

가. 각 종친회에서는 족보에 등재할 서원, 영당, 묘소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하여 사진 뒷면에 사진제목, 소재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편찬위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각 종친회에서는 폐기할 사보(계해보)를 서류로 신청하고 새로운 사보 추가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각 종친회에서는 계해보 사보를 검토하여 오자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사항을 복사하여 주서로 표시 제출한다.

五. 수단위원의 수단 작성요령

가. 수단위원은 당 족보편찬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 수단을 작성한다.

나. 먼저 구 족보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복사하고 정정하여 제출한다.

다.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을, 항렬상의 이름은 내용문에 자(字)로, 아호가 있는 사람은 아호라 기재한다.

라. 생년월일은 서기로 통일하고 만세력으로 기록한다. 출생일은 몇 년, 몇 월, 몇 일생(生)이라고 쓴다.

마. 사망 연월일도 서기로 통일한다. 사망일도 몇 년, 몇 월, 몇 일 졸(卒)이라고 쓴다.
※사망일은 사망일자로서 제삿날은 사망일의 전날이다.

바. 묘소는 소재지와 좌향을 기재한다.

사.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최종 2개씩, 포상은 장관급 이상으로 기재한다.

아. 부인은 이름까지 기록하고 부인의 조상은 아는 데까지 기록한다.
※부인의 생존자는 실(室)로, 사망자는 배(配)로 구분한다.

자. 사망 시 합폄은 합폄, 쌍분은 쌍분으로 기록한다.

차. 딸도 기재하며, 출가자는 사위까지 기록하며, 사위는 관향까지 기록한다.

카. 명하전은 생존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 1인당 13,000원씩으로 하고 출가자는 명하전을 제외한다.

2002年 ○月 ○日

○○○씨대동보편찬위원회